

1. 개정 이유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총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1명(6급 21명) 및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 휴대품 검역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4명(6급 5명, 7급 4명, 8급 5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 및 항만·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5년 8월 9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수산직불제팀, 스마트해운물류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데이터전략팀, 기후환경국제전략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0항 및 제11항 중 “2025년 8월 9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6 중 총계 “599”를 “601”로, 일반직 계 “595”를 “597”로,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95”를 “196”으로,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31”을 “32”로 한다.
별표 17 중 총계 “605”를 “607”로, 일반직 계 “601”을 “603”으로,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206”을 “207”로,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35”를 “36”으로 한다.

별표 1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07”을 각각 “321”로, 행정주사·해양수

산주사·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 “79”를 “84”로, 행정주사보·해양수산물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80”을 “84”로, 행정서기·해양수산물서기·운전서기·방호서기 또는 공업서기 “56”을 “61”로 한다.

별표 18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07”을 각각 “321”로, 행정주사·해양수산물주사·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 “80”을 “85”로, 행정주사보·해양수산물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79”를 “83”으로, 행정서기·해양수산물서기·운전서기·방호서기 또는 공업서기 “56”을 “61”로 한다.

별표 2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264”를 각각 “1,285”로,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해양수산물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415”를 “436”으로 한다.

별표 2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268”을 각각 “1,289”로,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해양수산물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416”을 “437”로 한다.

별표 31 중 7. 제46조제10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8월 9일) “2025년 8월 9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8. 제46조제1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8월 9일) “2025년 8월 9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30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5년 9월 30일”을 “2026년 9월 30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36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중 “2025년 9월 30일”을 “2026년 9월 30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436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중 “2025년 9월 30일”을 “2028년 9월 30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49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데이터전략팀 및 수산직불제팀은 각각 2025년 9월 30일”
을 “데이터전략팀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수산직불제팀은 2026년 9월 30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3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5년 9월 30일”을 “2026년 9월 30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62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5년 9월 30일”을 “2027년 9월 30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64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5년 9월 30일”을 “2027년 9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한시정원) ① ~ ③ 삭 제	제46조(한시정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 ⑨ 삭 제	
⑩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 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 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 라 <u>2025년 8월 9일까지</u> 별표 31 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 에 둔다.	⑩ ----- ----- ----- ----- -- <u>2026년 12월 31일</u> ----- ----- -----.
⑪ 항만·연안 방재연구센터 건 립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 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5년 8월 9일까지</u>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 부에 둔다.	⑪ ----- ----- ----- ----- --- <u>2026년 12월 31일</u> ----- ----- -----.
⑫ 삭 제	
⑬ ~ ⑰ (생 략)	⑬ ~ ⑰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령 제302호 해양수산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02호 해양수산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u>2025년 9월 30일까지</u>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 ----- -- <u>2026년 9월 30일</u> ----- --.
② · 제3조 (생략)	② · 제3조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령 제364호 해양수산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64호 해양수산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삭제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은 <u>2025년 9월 30일까지</u>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② ----- ----- ----- ----- <u>2026년 9월 30일</u> -----.
③ ~ 제4조 (생략)	③ ~ 제4조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령 제436호 해양수산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36호 해양수산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

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 2028년 9월 30일 -----
-----.

해양수산부령 제49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9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데이터전략팀 및 수산직불제팀은 각각 2025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데이터전략팀
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수산
직불제팀은 2026년 9월 30일-----
-----.

② ~ 제4조 (생 략)

② ~ 제4조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령 제53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3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 행으로 신설되는 스마트해운물 류팀은 <u>2025년 9월 30일까지</u> 존 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 ----- ---- <u>2026년 9월 30일</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령 제625호 해양수산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625호 해양수산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 행으로 신설되는 국립수산물품 질관리원의 소금산업진흥연구 센터는 <u>2025년 9월 30일까지</u> 존 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 ----- ---- <u>2027년 9월 30일</u> ----- -----.
②·제3조 (생 략)	②·제3조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령 제641호 해양수산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641호 해양수산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 행으로 신설되는 기후환경국제 전략팀은 <u>2025년 9월 30일</u> 까지 존속한다. ② (생 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 ----- ----- <u>2027년 9월 30일</u> ----- -----. ②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599	601	+2
일반직 계	595	597	+2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95	196	+1

행정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 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환경 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운전 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 ·	<u>31</u> · ·	<u>32</u> · ·	+1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7]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605</u>	<u>607</u>	+2
	.		.	.	
	.		.	.	
일반직 계			<u>601</u>	<u>603</u>	+2
	.		.	.	
	.		.	.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					
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			<u>206</u>	<u>207</u>	+1
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식품					
위생사무관 · 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		.	.	
	.		.	.	

행정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 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환경 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운전 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 ·	<u>35</u> · ·	<u>36</u> · ·	+1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07</u>	<u>321</u>	+14
일반직 계	<u>307</u>	<u>321</u>	+14
·	·	·	
·	·	·	
행정주사 · 해양수산주사 · 전산 주사 또는 공업주사	<u>79</u>	<u>84</u>	+5
행정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 운전주사보 · 방호 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u>80</u>	<u>84</u>	+4
행정서기 · 해양수산서기 · 운전 서기 · 방호서기 또는 공업서기	<u>56</u>	<u>61</u>	+5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8의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07</u>	<u>321</u>	+14
일반직 계	<u>307</u>	<u>321</u>	+14
·	·	·	
·	·	·	
행정주사 · 해양수산주사 · 전산 주사 또는 공업주사	<u>80</u>	<u>85</u>	+5
행정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 운전주사보 · 방호 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u>79</u>	<u>83</u>	+4
행정서기 · 해양수산서기 · 운전 서기 · 방호서기 또는 공업서기	<u>56</u>	<u>61</u>	+5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4]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7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264</u>	<u>1,285</u>	+21
일반직 계	<u>1,264</u>	<u>1,285</u>	+21
·	·	·	
·	·	·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환 경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u>415</u>	<u>436</u>	+21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5]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7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268</u>	<u>1,289</u>	+21	
일반직	계			<u>1,268</u>	<u>1,289</u>	+21	
		·		·	·		
		·		·	·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u>416</u>	<u>437</u>	+21	
		·		·	·		
		·		·	·		

신 · 구정원대비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6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7. 제46조제10항 관련 한시정원 (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 · <u>7. 제46조</u> <u>제10항 관</u> <u>련 한시정</u> <u>원(존속기</u> <u>한: 2025</u> <u>년 8월 9</u> <u>일)</u>	· · <u>7. 제46조</u> <u>제10항</u> <u>관련 한</u> <u>시정원</u> <u>(존속기</u> <u>한: 2026</u> <u>년 12월 3</u> <u>1일)</u>	
· · 8. 제46조제11항 관련 한시정원 (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 · <u>8. 제46조</u> <u>제11항 관</u> <u>련 한시정</u> <u>원(존속기</u> <u>한: 2025</u> <u>년 8월 9</u> <u>일)</u>	· · <u>8. 제46조</u> <u>제11항</u> <u>관련 한</u> <u>시정원</u> <u>(존속기</u> <u>한: 2026</u> <u>년 12월 3</u> <u>1일)</u>	

	.	.	.	
	.	.	.	